

『구미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을 확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여대상, 결정절차, 예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정한 명예시민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수여대상 확대(안 제2조)
(현행) 외국인·해외교포
(개정) 외국인·해외교포 또는 구미시민이 아닌 내국인
- 수여대상 구체화(안 제2조)
- 수여대상자 결정절차 변경(안 제3조)
(현행) 인사위원회의 의결
(개정)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후, 구미시의회 동의
- 수여자 예우 규정 신설(안 제4조)
- 「권리와 의무부담」 규정 삭제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선언적 규정으로 구성된 현행 조례를 구체적 규정으로 개정하여 명예시민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기존의 외국인·해외교포와 더불어 구미시민이 아닌 내국인까지 수여 대상을 확대하며, 수여 절차 및 취소 절차 등 명예시민증 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명예시민증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고, 명예시민증 수여자의 예우를 현실성 있게 기재하여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 제고를 꾀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